

예 산 총 칙

2022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923,749,332 | 27,712,480 |
| 일반회계 | 812,110,389 | 24,363,312 |
| 특별회계 | 111,638,943 | 3,349,168 |
| 공기업특별회계 | 86,209,665 | 2,586,290 |
| 공영개발특별회계 | 22,275,513 | 668,265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36,149,166 | 1,084,475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27,784,986 | 833,550 |
| 기타특별회계 | 25,429,278 | 762,878 |
| 의료급여특별회계 | 633,263 | 18,998 |
|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| 10,682 | 320 |
| 에스디해바라기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 | 2,783 | 83 |
| 삼익악기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28,608 | 858 |
| 소수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8,026 | 241 |
| 음성예코파크연료전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 | 511,174 | 15,335 |
| 사당리태양광발전소제1호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 | 800 | 24 |
| 사당리태양광발전소제2호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 | 800 | 24 |
|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| 5,471,229 | 164,137 |
| 균형발전특별회계 | 2,166,536 | 64,996 |
|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| 1,766,470 | 52,994 |
| 주차장운영특별회계 | 1,529,232 | 45,877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| 1 | 0 |
| 지하수관리특별회계 | 504,719 | 15,142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12,794,955 | 383,849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,204,557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8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(재원구분)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
- 국고보조금(국),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(균), 중앙기금보조금(기), 도비보조금(도), 특별교부세(특), 시군조정교부금등(조), 지방채(채)